

베트남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센터 기술자문 국외출장 계획

1. 목 적

-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센터(OSHTC)의 요청에 따라 해당국 화학공장, 발전소 및 정유공장에 근무하는 검사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부식 평가에 관한 기술 전수 및 기술자문 실시를 통해 해당국 관련기술 향상 및 노동자 보호에 기여

2. 출장개요

- 출장기간 : 2018. 12. 19(수) ~ 12. 23(일) 【3박 5일】
- 출 장 자 : 2명
 -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안전공학교육부 강민수 교수
 - 광주지역본부 기술지원국 중대산업사고예방 기술지원부 전문직 4급 오상규
- 출 장 지 : 베트남 하노이

3. 출장일정

일 정	내 용
'18. 12. 19(수)	○ 출국(인천 → 하노이)
'18. 12. 20(목) ~ 12. 21(금)	○ 금속부식평가 관련 교육 및 기술자문 - 화학공장 · 화학설비 · 압력용기 개론 - 화학설비 및 압력용기 검사기준 - 화학설비 및 압력용기 안전장치 - 부식 메커니즘 - 화학공장 설비별 금속부식
'18. 12. 22(토) ~ 12. 23(일)	○ 귀국(하노이 → 인천)

※ 프로그램 : 【덧붙임】

4. 행정사항

- 동 출장은 ‘18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“국제세미나 참석과 국외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협력 및 재해예방 역량 강화” 사업으로 추진
- 국외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「공직자 선물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 ※ 선물신고안내문 : 【덧붙임2】
- 공항이동을 위한 국내 운임은 국내여비로 처리
- 출장자는 출발전 ‘ERP/공통/국외출장 신청 및 조회’에 출장정보 입력, 복귀 후 마일리지 적립내용 신고 철저

【덧붙임1】

프 로 그 램

일 자	시 간	프로그램	비 고
12.20.(목)	09:00 ~ 10:00	등록 및 개회	
	10:00 ~ 12:00	화학공정 및 설비 · 압력용기 개관	
	12:00 ~ 13:00	중식	
	13:00 ~ 15:00	화학설비 및 압력용기 검사기준	
	15:00 ~ 17:00	화학설비 및 압력용기 안전장치	
	17:00 ~ 18:00	질의응답, 토론	
12.21.(금)	10:00 ~ 12:00	부식 메카니즘	
	12:00 ~ 13:00	중식	
	13:00 ~ 17:00	화학공장 설비별 금속부식	
	17:00 ~ 18:00	질의응답, 토론	

【덧붙임2】

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선물받은 공직자

-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
-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(미화 100달러)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를 작성하여 **감사실로 제출**
 - *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(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)

↓ (신고서 제출)

안전보건공단
(감사실)

-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즉시 신고 접수
-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: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**선물 신고 접수**
 - *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(붙임 4)에 기록·유지
 - *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·유지 가능
- 신고받은 날부터 **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관**
 - * 선물관리대장(붙임 5)에 기록·유지
 - *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, 선물 사진, 규격서 등 첨부

↓ (이관)

고용노동부장관

- 이관 받은 선물을 인사혁신처로 재이관

↓ (재이관)

인사혁신처장

-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